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9
----------	-----

2023. 12. 12.(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29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최근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sup>2)</sup>, 충청북도의 학교폭력 발생률 또한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지 않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경찰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2020년 589건, 2021년 827건, 2022년 917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있는 경미한 사안과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음<sup>3)</sup>.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23.4).

3) 충청북도교육청 내부자료

- 이에 증가하고 있는 도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와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 정의 개정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의 용어정의를 다시 개정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정의를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보다 안 제2조와 같이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향후 법률이 개정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고 법률과 조례의 해석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를 방지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제5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8항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법과 시행령에 혼재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와 제6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한정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도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불명확함.
  - 이에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료히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 종합 검토의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교육 및 사안 발생시 적극적인 처리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중요하지만 이를 학교 현장의 역할만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6.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